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심사 보고서

1994. 4. 12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3. 24.

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 일자 : 1994. 4. 1

다. 상정 일자 :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94. 4. 12) 상정, 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 설명자 : 세무1과장
최영명)

가. 제출이유

- 지방세법(1994. 1. 7. 법률제4720호)이 개정되고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전설기계관리법(1993. 6. 11. 법률제4561호)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불일치되는 용어 및 법조문을 정비하여 관련법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중 “중기”를 “전설기계”로 용어변경(안, 제17조 제1항)
- 종전의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 제7호 내용이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 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인용부분 변경(안, 제19조 제1항)
- 납세의무자의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내용중 “중기”를 “전설기계”로 용어변경(안, 제24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
○ 지방세법(1994. 1. 7. 법률 제4720호)

의 개정으로 법 제184조의3제2항 제7호의 내용이 법 제184조의3제2항 제6호로

변경됨에 따라, 동 조례안 제19조제1항의 인용 부분을 개정하고,

○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전설기계 관리법(1993. 6. 11. 법률 제4561호)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, 안 제17조제5호와 제24조의 내용중 불일치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• 질문(조희태 위원) : “중기”와 “전설기계”的 차이점은 무엇인가?

• 답변(최영명 세무1과장) :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전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명칭만 바뀌고 종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8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3. 24.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세법(1994·1·7 법률제4720호)이 개정되고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전설기계관리법(1993·6·11 법률제4561호)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불일치되는 용어 및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여 관련법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 중 “증기”를 “건설기계”로 용어 변경(안, 제17조제5호)
- 종전의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 내용이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중 인용부분 변경(안, 제19조제1항)
- 납세의무자의 증기에 대한 신고의무 내용중 “증기”를 “건설기계”로 용어변경(안, 제24조)

3. 개정근거

- 지방세법(1994. 1. 7. 법률 제4720호) 제2조, 제3조, 제181조 및 제184조의3 제2항제6호
- 건설기계관리법(1993. 6. 11. 법률 제4561호)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필요성 :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제5호중 “증기의명칭”을 “건설기계의명칭”으로 한다.

제19조 제1항중 “법제184조의3 제2항 제7호”를 “법제184조의3제2항제6호”로 한다.

제24조(제목을 포함한다)중 “증기”를 각각 “건설기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비과세및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(생략).....	제17조(비과세및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(현행과 같음).....
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<u>증기의 명칭</u> 및 종류, 취득년월일, 등록번호, 등록년월일, 용도 6. (생략) 7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건설기계의 명칭</u> 및 종류, 취득년월일, 등록번호, 등록년월일, 용도 6. (현행과 같음) 7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 법제184조의3 제2항 제7호에서 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”이라 함은 다음것을 말한다. 1. 내지4(생략) ② (생략)	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 법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”이라 함은 다음것을 말한다. 1. 내지4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<u>증기</u>에 대한 신고의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<u>증기</u>의 명칭 및 종류·취득년월일·등록번호·용도·취득가격·과세사실 발생년월일·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증기</u>를 취득한 때 2. <u>증기</u>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. 국외에서 사용하던 <u>증기</u>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. 비과세<u>증기</u>가 과세<u>증기</u>로 된 때 5. 과세<u>증기</u>가 비과세<u>증기</u>로 된 때 	<p>제24조(<u>전설기계</u>에 대한 신고의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<u>전설기계</u>의 명칭 및 종류·취득년월일·등록번호·용도·취득가격·과세사실 발생년월일·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전설기계</u>를 취득한 때 2. <u>전설기계</u>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. 국외에서 사용하던 <u>전설기계</u>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. 비과세<u>전설기계</u>가 과세<u>전설기계</u>로 된 때 5. 과세<u>전설기계</u>가 비과세<u>전설기계</u>로 된 때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4. 4. 11.
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2. 21.

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2. 22.

다. 상정일자 :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
(1994. 4. 11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과장 이영복)

가. 제출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자치구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하여 대

구민을 보호하는데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에 관한 사항
-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
-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
-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
- 위원회의 간사동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
-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

3.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전재)

- 1) 동조례(안)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물가의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- 2) 물가관련규정의 재개정·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한 동위원회의 설치